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6. 25. ~ 2021. 6. 30.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으로 퇴직한 군인 및 유가족  
**※ 제외대상** : ① 1959년 이전 일등중사(하사) 이하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② 1960년 이후 퇴직자  
③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가족  
④ 국가보안법, 형법에 의한 금고1년 이상의 실형 또는 확정자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육 군 : ☎ 042-550-745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 직위개발협력과

·해 군 : ☎ 042-553-1156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공 군 : ☎ 042-552-154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해 병 대 : ☎ 031-928-2816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18호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

※ 해병대는 상기 해병대사령부(화성·봉담읍)로 방문 접수

#### 4. 신청 제출서류

#####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 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1) 유족이 1명인 경우
  -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퇴직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상세로 발급)
- 2)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와 동일
  - ② 유족 중 대표자로 선정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2호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③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하단의 전역자지원 내  
「59년퇴직급여금신청」 메뉴를 클릭 후 신청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7451), 해군(☎042-553-1156),  
공군(☎042-552-1541), 해병대(☎031-928-2816),  
국방부(☎02-748-6638, 6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